##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07

발의연월일: 2022. 11. 28.

발 의 자:김영주·고영인·김경만

김민철 · 송옥주 · 양경숙

윤건영 • 윤영덕 • 이원욱

이인영 · 정태호 · 정필모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명의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위탁점에게 부정가입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리점 및 위탁점 등에서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바, 본인 확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 는 것임(안 제104조제2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2조제1항제1호(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 제92조제1항제1호(제32조의4
	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
	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